

『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4월 1일

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,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
-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시세 세목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, 사업소세 폐지(안 제3조)

-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8조 부터 안 제22조의5)
 -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 함
-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
 - 농업소득세 : 현행 시세 조례 제41조 ~ 제51조
 - 사업소세 : 현행 시세 조례 제95조 ~ 제100조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세정과-59(2010.1.6)호 시세조례 표준안(행정안전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,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세 세목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함
-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, 지방소득세 도입과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